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 조세특례			
가입신청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내용			
의견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의의가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신청 조세특례란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원, 조합 등 출자금, 조합등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중 본인이 신청한 조세특례를 기재합니다.